

비과세주택마련저축특약

제1조 약관의 적용

비과세주택마련저축(이하 “이 저축”이라 한다)의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령 및 예금거래기본약관,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한다.

제2조 가입대상

이 저축의 가입대상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저축기간

이 저축의 저축기간은 7년 이상 10년 이내로 한다.

제4조 저축한도 및 부금의 납입

이 저축의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분기별 300만원 범위 안에서 1만원 단위로 불특정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.

제5조 이율의 변경

①이 저축은 가입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된 이율을 가입일로부터 3년간 확정하여 적용한다. 다만, 가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매년 가입 해당일에 고시된 자유적립적금 1년제 해당이율을 변경하여 적용한다.

②이 저축을 만료일 이전에 중도해지하거나 만기일 경과후 해지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이율적용방법에 따른다.

제6조 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

이 저축은 양도할 수 없으며, 새마을금고가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권 설정할 수 없다.

제7조 명의변경

이 저축의 명의변경은 예금주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 한한다.

제8조 저축자료의 정보제공

새마을금고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예금주별 이 저축자료를 제출하고 예금주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이 저축의 분기별 한도금액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.

제9조 특별중도해지

①이 저축의 가입자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처리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 신고서를 제출

하여야 한다.

제10조 가입부적격자에 대한 처리

국세청으로부터 가입부적격자로 통보가 있을 때에는 입금 중지 및 중도 해지 처리한다.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 연장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특약은 200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특약 시행 당시 성립,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③(가입대상 및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대한 적용례) 제2조 및 제9조제1항제6호의 조항은 각각 2007년12월31일과 2008년 2월22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특약은 200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특약 시행 당시 성립,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특약은 200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특약 시행 당시 개정 전 특약에 의해 성립·처리된 사항은 이 특약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③(가입대상에 대한 적용례) 제2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특약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특약 시행 당시 개정 전 특약에 의해 성립·처리된 사항은 이 특약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